

후대교배종 면화 281/3006×MON88913

1. 법적근거

-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(위해성 심사절차 및 대행 등), 동법 시행령 제16조(위해성 심사의 협의)
-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1-4조(위임위탁기관), 제1항, 제4-9조 (후대교배종 심사 등)

2. 후대교배종 위해성 심사현황

	모품종 1	모품종 2
Event 명	281/3006	MON88913
특성		
심사완료일		

3. 심사경위

○ 「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」 제 7조의 2에 따라 위해성심사 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간 인공교배에 의해 육종된 후대교배종은 상호작용 유무 및 후대교배종의 특성*등을 검토함

*분자생물학적 분석, 단백질 발현량 비교, 생물활성, 영양성분 분석 등
- LMO 위해성 심사 접수('08.07.18.) 및 심사 진행

4. 심사결과

- 281/3006×MON88913의 *cry1Ac* 및 *cry1F* 유전자에 의한 해충 저항성, *pat* 유전자에 의한 제초제 glufosinate(글루포시네이트)에 대한 내성 및 *cp4 epsps* 유전자에 대한 포장시험결과를 보면 양친과 유사하게 면화의 잎, 이삭, 줄기와 뿌리에서의 해충저항성 및 제초제에 대한 내성을 나타내어 삽입된 유전자가 정상적으로 발현되고 형질발현에 있어 상호작용이 일어난 증거는 없다고 판단된다.

- 그리고 Southern blot 결과를 보면 양친의 유전자가 각각 안정적으로 유전되는 것으로 확인되고, 삽입된 유전자의 핵산 간 상호작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.